



무적차량이 질주한다!!

— 버스용 에어컨 문제 진단 —

*갑을오토텍 불법대체생산이 불러올
미래의 참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2016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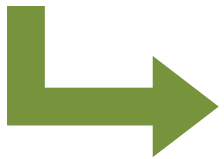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쟁의행위 돌입 후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노조파괴 목적 한 전면적 대체생산 확인

2016년
9월

불법대체생산 사실 부인하며 증거인멸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자체 조사단 구성으로 불법대체생산 증거확보

2016년
10월

노동조합 불법대체생산 조사단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현행법(고
압가스관리법 등)을 위반한 대체생산 협력업체 확인



대상업체 LTS에 대해 평택시청에 진성서 제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국회의원 이용득 의원실 주관 기자회견

문제가 된 대상업체 LTS의 기존 생산제품
(갑을오토텍이 납품받는 제품)

EVAP COIL 단품



사건개요 - 제조의 적법성

1

갑을오토텍이 완성차에 납품하는 제품(현대차 전주공장, 기아차 광주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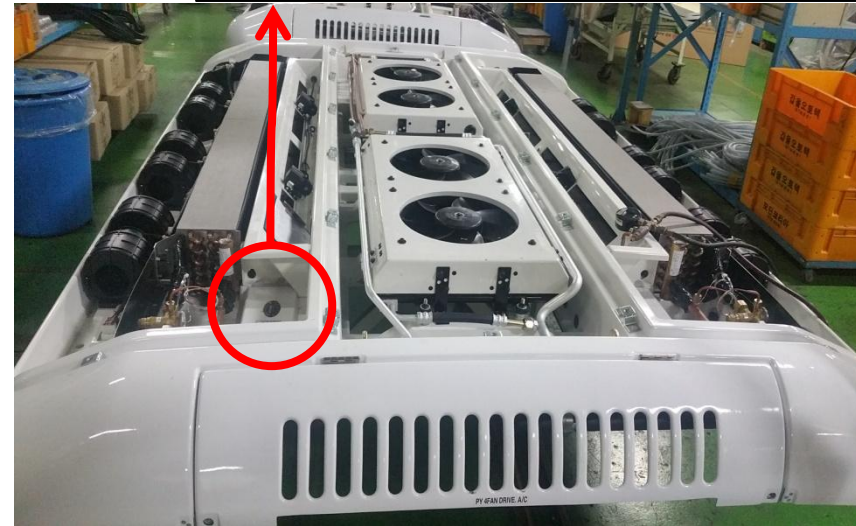
탁월한 냉·난방, 강력한 에어컨 컨트롤 시스템!

냉·난방에 필요한 실내공기를 만들어주는 강력한 에어컨 컨트롤 시스템은 승객 모두가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 현대차 전주공장(유니버스, PY)

갑을오토텍 각인이 붙여져 있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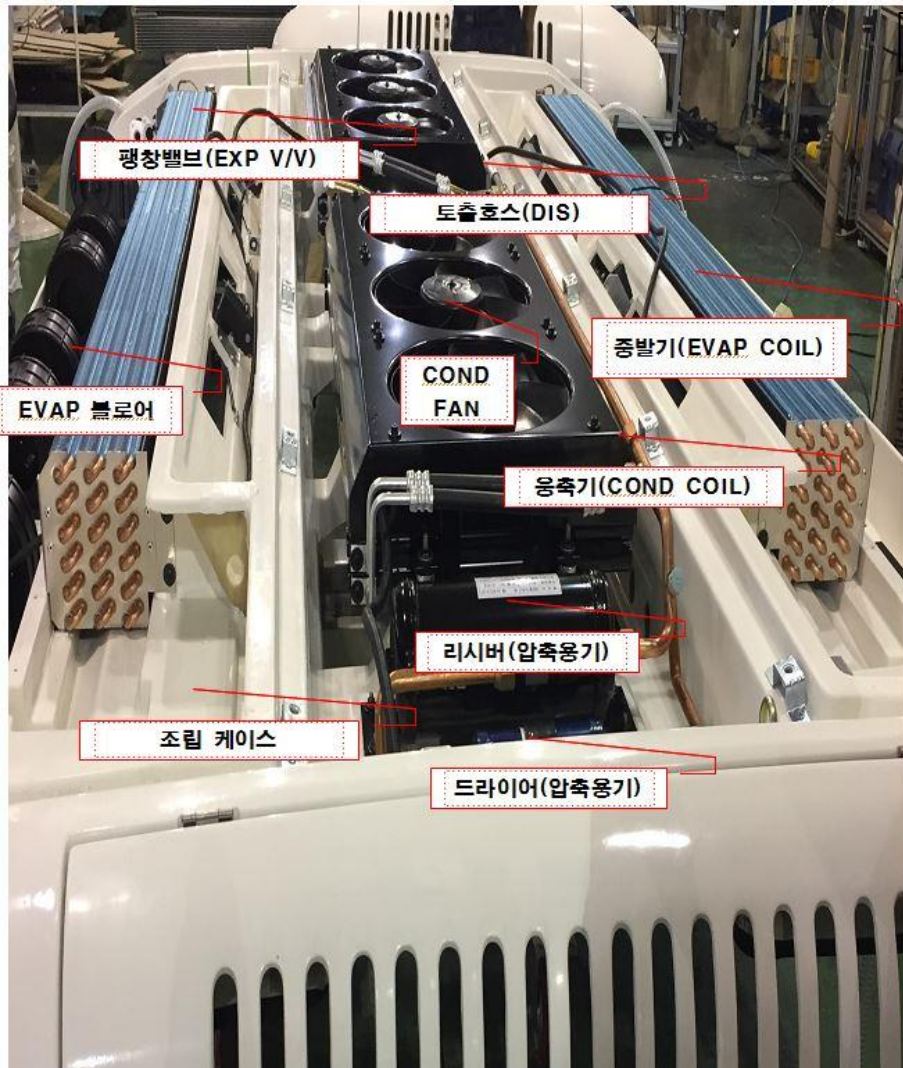


← 기아차 광주공장(그랜버드, GZ)

사건개요 – 제조의 적법성

1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이후 (주)엘티에스가 생산중인 제품



← 갑을오토텍에서 생산했던 제품(유니버스, PY)

〈아래〉 갑을오토텍에서 생산했던 제품(그랜버드, GZ)



사건개요 - 검사 및 제조허가 각인

1



← 갑을오토텍이 완성차에 납품할 때 부착되는 위치와 내용

갑을오토텍 네임플레이트(상세)
(모델명, 제조허가여부, 성능테스트 결과 등)

KB AutoTech		BUS AIR CONDITIONER	
MODEL :	KBA-PY280RN	SERIAL NO :	19170
CAPACITY :	4.6 RT	D.P (HIGH) :	2.75 MPa
REFRIGERANT :	R-134a	D.P (LOW) :	0.9 MPa
DATE :	2016.06	T.P (HIGH) :	3.03 MPa
		T.P (LOW) :	0.99 MPa
KB AutoTech		MADE IN KOREA	

〈아래〉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는 검사필증(상세)



(주)엘티에스가 생산한 버스 에어컨 유니트 완성품

현대차에 납품된 유니버스(PY)
: 네임플레이트, 검사필증 없음



기아차에 납품된 그랜버드(GZ)
: 네임플레이트, 검사필증 없음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①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들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① 법 제11조의 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버은 별표 24와 같다. ② 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등

➔ 엘티에스가 생산조립하여 갑을이 두원공조 이름으로 현대차에 납품하는 버스용에어컨은 기존 갑을오토텍이 납품했던 방식으로 고압가스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제조허가(등록)와 법이 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각인을 부착해야 하며, 동시에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함.

문제점 및 쟁점 1 - 제조허가(등록)에 관한 사항

업 체 현 황 : (주)엘티에스

1. 업체개요

○ 공 장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서해로 529
 ○ 대 표 자 : 박수현
 ○ 전 화 번 호 : 031) 686-9710 ○ FAX 번 호 : 031) 686-9716
 ○ 최 초 등 록 일 : 2007-11-26
 ○ 공 장 상 태 : [등록변경]

2. 공장현황

○ 공장용지면적 : 7,360.000 m²
 ○ 제조시설면적 : 2,409.860 m² ○ 부대시설면적 : 632.780 m²
 ○ 업 종 :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업 종 코 드 : 29176
 ○ 주 생 산 품 : 열교환기
 ○ 근 로 자 수 : 30 명(남: 29 명, 여: 1 명)
 ○ 환 경 판 련 : 대기 - 5종 수질 - 5종 소음/진동 유무 - 유

3. 생산 및 수출현황

구 분	매출액	수출액	비 고

4. 변경이력

변 경 일	회 사 명	대 표 자	공장상태	인허가구분	공장용지(m ²)	제조시설(m ²)	부대시설(m ²)
2016-07-27	(주)엘티에스	박수현	[등록변경]	등록변경	7,360.00	2,409.86	632.78
2014-12-05	(주)엘티에스	성기호	[등록변경]	등록변경	7,360.00	2,409.86	632.78
2009-04-13	(주)엘티에스	성기호	[등록변경]	등록변경	7,360.00	2,409.86	632.78
2008-02-21	(주)엘티에스	최승복	[완료신고]	완료신고	7,360.00	2,409.86	632.78
2007-11-26	(주)엘티에스	최승복	[부분등록]	부분등록	9,111.00	2,057.06	632.78
2007-06-01	(주)엘티에스	최승복	[제조시설설치 승인]	제조시설설치	9,111.00	2,057.06	632.7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근거

차량용 용기 등을 제조, 조립납품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제조등록을 해야 함. 또한 그에 필요한 법이 정한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함.

반면, 옆의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주)엘티에스는 법이 정한 제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임.

이에 대해 (주)엘티에스는 제조등록 대상 업체가 아니라는 일부 주장(단순 조립납품)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엘티에스로부터 납품 받아 완성차에 판매하는 두원공조가 제반 시설 및 등록이 돼 있어야 함.

두원공조 역시 제조등록이 안돼있음.

➔ 결론적으로 엘티에스 또는 두원공조는 사실상 무등록 상태에서 버스용에어컨을 납품한 것임.

문제점 및 쟁점 2 - 네임플레이트 및 검사필증 미부착

기존 갑을오토텍의 버스용에어컨 납품 경로

(주)엘티에스 납품경로

(주)엘티에스 - 증발기 등

↓
갑을오토텍 - 증발기, 응축기, 팽창밸브, 드
라이어, 리시버탱크 등 조립 완제품

↓
성능시험 및 내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네임플
레이트 부착

↓
공인검사기관인 한국냉동공조산업협의회가 교부
한 제품검사필증 부착

↓
완성차(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납품

(주)엘티에스가 직접제조조립

“생략”

두원공조 생산시설 거치지 않고
완성차에 납품

제조등록 및 검사 필증 없이 불법제조로 생산된 대형버스가
시중 판매돼 운행되고 있음.(생명위협)

사고발생 시 언제, 누가 생산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책임소재 불분명

(주)엘티에스 또는 두원공조 외에 수많은 불법대체생산 업체
들이 연결돼 있어 문제 확산 가능성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불법대체생산 은폐가 가져온 결과로 향후에는 버
스용 에어컨 뿐만 아니라 전체 차종으로 확대될 수 있음.

1차 진정 결과 및 추가 경과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질의회시

노조 진정에 대한 평택시 공식 답변

민원 : 접수번호 / 지역경제과 (2016-11-04 17:40:52)
"가스안전 글로벌 TOP 전문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신 평택시안중출장소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진정민원 관련 질의(추가)"회신

1. 기준처-1632(평택시안중출장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진정민원 관련 질의(추가)", 2016. 10. 3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불인 진정민원 사항에 따른 피 진정인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여부

☐ 검토의견
○ 귀 시의 질의내용과 관련한 현장실태 조사 결과, ㈜엘티에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등록은 되어 있으나, 냉동기 제조등록은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동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응축기, 증발기 등)을 납품받아 냉동기를 조립·제조한 업체는 냉동기 제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엘티에스에서 제조한 제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가목에 따른 냉동기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6호에 따른 냉동용 특정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냉동용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32호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0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시안중출장소

수신 이재현(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타지회) 귀하
(경유)
제목 진정민원에 대한 답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등록 및 검사 규정 위반 관련]

1. 귀 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지회에서 제출하신 ㈜엘티에스(대표 박수현)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등록 및 검사 규정 위반에 관한 진정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진정하신 ㈜엘티에스는 응축기 및 증발기에 대한 고압가스 특정설비 제조 등록을 마쳤으며('15. 3. 2.),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 결과 동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 제1호 가목에 따른 냉동기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6호에 따른 냉동용 특정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응축기, 증발기 등)을 납품받아 냉동기를 조립·제조한 업체는 냉동기 제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엘티에스에서 제조한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진정하신 ㈜엘티에스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 제6호에 따라 고발(평택경찰서 수사1과)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13의2 행정처분기준 1의 라목에 따라 제조한 냉동용 특정설비(응축기, 증발기)에 대해 검사받지 않은 제품 반출 금지 지시 및 검사 이행 결과를 2016년 11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시정권고 미이행시 동 시행규칙 별표13의2 행정처분기준 2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의 처분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1차 진정 결과 및 추가 경과

3

10월 21일

(주)엘티에스가 납품했다고 주장하는 두원공조(주)에 대해 충남 아산시청에 불법제조관련 진정서 추가 제출

10월 26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현대자동차, 두원공조, 엘티에스 고발장 접수

11월 8일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노동조합 진정 결과 회신

- (주)엘티에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형사고발
- 미검사제품 반출금지 등 행정처분

11월 8일

응축기를 (주)엘티에스에 납품하여 불법제조를 도운 클라이젠(주)도 제조등록이 안돼 있음을 확인하고 충남 예산군에 진정서제출

향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설명회, 시민사회단체 설명회, 관할 행정청의 행정처분 촉구 등을 계획하고 있음.